

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 회 사 무 국
위 원 회 제 안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연월일	2024. 6. 4.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24. 6. 4.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구미시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라 각 위원회의 전문위원 직급을 본문과 같이 규정하여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과 안정적인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사항 규정 변경
 - 의회운영전문위원이 담당하는 의회사무국의 회계 및 복무에 관한 사항 등 단서 조항 삭제
-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직급 규정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

구미시 규칙 제 호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사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전문위원) ① (생략)</p> <p>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p>1. ~ 5. (생략)</p> <p>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사항(단, 타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와 회계, 소속공무원 복무관리 등의 회사무국의 각종 사무를 의회 운영전문위원이 담당한다)</p>	<p>제3조(전문위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사항</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전문위원별직급 (제3조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위원회명</th> <th>직위</th> <th>직급</th> <th>인원</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td> <td></td> <td>5</td> </tr> <tr> <td rowspan="2">의회운영위원회</td> <td>소계</td> <td></td> <td>1</td> </tr> <tr> <td>의회운영전문위원</td> <td>지방행정사무관</td> <td>1</td> </tr> <tr> <td rowspan="3">기획행정위원회</td> <td>소계</td> <td></td> <td>2</td> </tr> <tr> <td rowspan="2">기획행정전문위원</td> <td>지방행정사무관</td> <td>1</td> </tr> <tr> <td>지방행정주사</td> <td>1</td> </tr> <tr> <td rowspan="4">산업건설위원회</td> <td>소계</td> <td></td> <td>2</td> </tr> <tr> <td rowspan="4">산업건설전문위원</td> <td>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td> <td>1</td> </tr> <tr> <td>지방행정주사</td> <td rowspan="3">1</td> </tr> <tr> <td>또는 지방농업주사</td> </tr> <tr> <td>또는 지방시설주사</td> </tr> </tbody> </table>	위원회명	직위	직급	인원	총계			5	의회운영위원회	소계		1	의회운영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1	기획행정위원회	소계		2	기획행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1	지방행정주사	1	산업건설위원회	소계		2	산업건설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지방행정주사	1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전문위원별직급 (제3조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위원회명</th> <th>직위</th> <th>직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의회운영위원회</td> <td>의회운영전문위원</td> <td rowspan="2">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td> </tr> <tr> <td>기획행정전문위원</td> </tr> <tr> <td rowspan="2">산업건설위원회</td> <td>산업건설전문위원</td> <td rowspan="2">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td> </tr> <tr> <td>문화환경전문위원</td> </tr> </tbody> </table>	위원회명	직위	직급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기획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문화환경전문위원
위원회명	직위	직급	인원																																												
총계			5																																												
의회운영위원회	소계		1																																												
	의회운영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1																																												
기획행정위원회	소계		2																																												
	기획행정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1																																												
		지방행정주사	1																																												
산업건설위원회	소계		2																																												
	산업건설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지방행정주사	1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위원회명	직위	직급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기획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문화환경전문위원																																														

【별표】

전문위원별직급 (제3조관련)

위원회명	직위	직급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문화환경위원회	문화환경전문위원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 7급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